

최저임금 결정기준

2014년 5월

김 유 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7-3 국민서관빌딩 502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Korea Labour & Society Institute

전화: 02-393-1457 팩스: 02-393-4449

www.ksli.org www.facebook.com/ksiedit

최저임금 결정기준¹⁾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임금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임금계층이 양산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2년 말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후보는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소득분배조정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공약했고, 문재인 후보는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들 공약을 종합하면, ① 중장기적인 최저임금 수준 목표치는 평균임금의 50%로 하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② 평균임금의 50%를 달성할 때까지는 매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소득분배조정분’을 하한선으로 하여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향에서 합의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처럼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합의한다 해도 문제가 말끔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기준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평가와 대책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중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시간당 정액급여(또는 통상임금) 평균값의 50%’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명박 정부 때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은 연평균 6.5%인데,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은 3.2%로 매년 3.3%p 덜 올랐고, 조정 노동소득분배율은 2008년 90.1%에서 2013년 84.6%로 5.5%p 떨어졌다. 이명박 정부 때 악화된 분배구조만 개선하려 해도 앞으로 5년 동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은 매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3.3%’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이보다 높게 책정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1) 이 글은 최저임금연대가 주최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기준의 문제점과 올바른 기준 마련 토론회』(2014년 5월 27일)에서 같은 제목으로 발표한 글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1. 들어가는 말

임금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임금계층이 양산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후보는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소득분배조정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공약했고, 근로감독 강화와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2013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는 ‘합리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가이드라인 마련, 중장기적인 적정 최저임금 수준 목표치 설정’을 제시했다.

문재인 후보는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2012년 5월 30일 문재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이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에 도달하기까지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합산의 3년 평균치를 하회할 수 없다’라 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① 중장기적인 최저임금 수준 목표치는 평균임금의 50%로 하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② 평균임금의 50%를 달성할 때까지는 매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소득분배조정분’을 하한선으로 하여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향에서 합의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처럼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합의한다 해도 문제가 말끔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기준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평가와 대책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50%에 크게 못 미친다고 보는데 비해, 정부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50%에 근접한다고 주장한다. 제2절에서는 OECD 자료를 사용해서 최저임금 수준을 국제비교하고, 제3절에서는 어떤 통계를 어떤 기준에서 사용할 것인지를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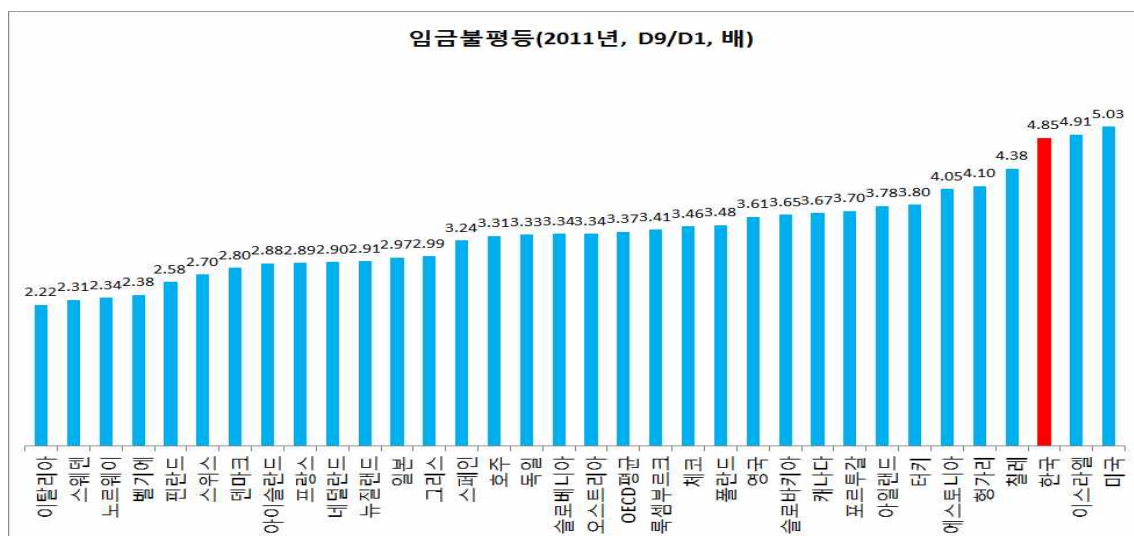
제2절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1. 임금불평등과 저임금계층

1) 임금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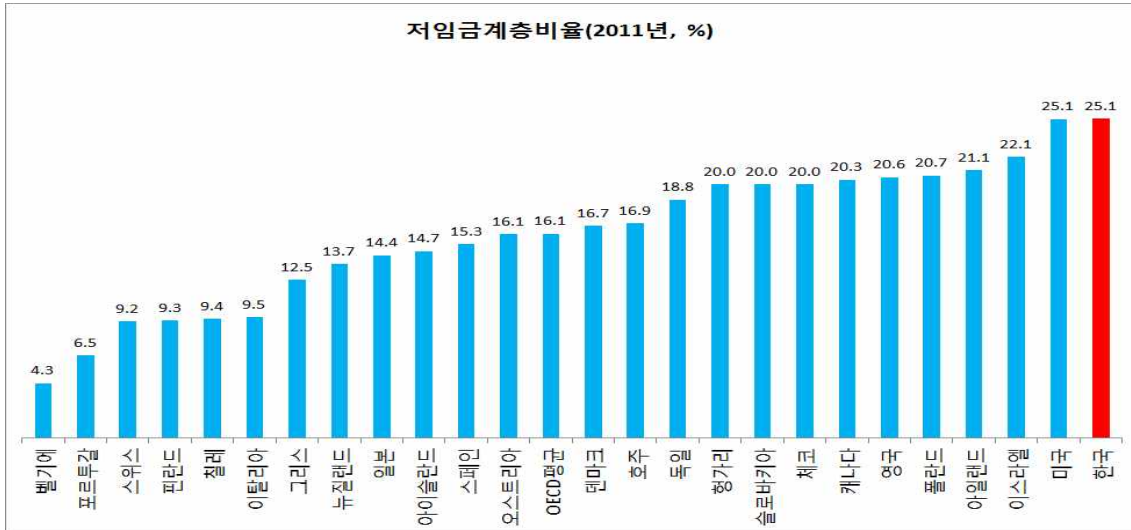
OECD에 따르면 2011년 한국의 임금불평등(D9/D1, 하위 10% 임금 대비 상위 10% 임금)은 4.85배로, OECD 33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 OECD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멕시코까지 감안하면 한국이 네 번째로 높다.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멕시코(2008년 5.71배), 미국(5.03배), 이스라엘(4.91배) 세 나라다.

하지만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2011년 한국의 임금불평등은 5.98배고,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는 월 임금 기준으로 5.43배,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5.07배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멕시코가 한국보다 더 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한국의 임금불평등은 OECD 국가 중 가장 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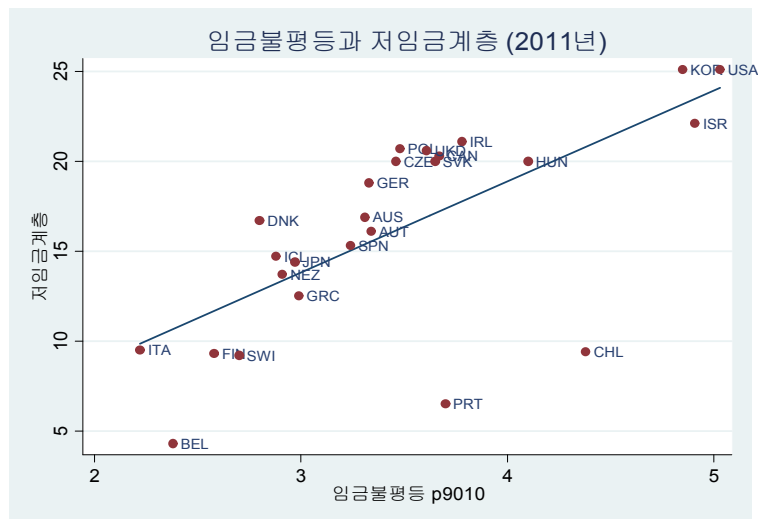
2) 저임금 계층

임금불평등이 심하면 그만큼 저임금계층(중위임금 2/3 미만)이 양산된다. OECD에 따르면 2011년 한국의 저임금계층은 25.1%로 25개 회원국 중 가장 많다. 한국 다음으로는 미국(25.1%), 이스라엘(22.1%), 아일랜드(21.1%), 폴란드(20.7%), 영국(20.6%) 순으로 저임금계층이 많다.



3) 임금불평등과 저임금계층

임금불평등과 저임금계층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한국과 미국, 이스라엘은 저임금계층이 가장 많고 임금불평등이 가장 심하다. 이에 비해 벨기에, 이태리, 핀란드, 스위스는 저임금계층은 가장 적고 임금불평등은 가장 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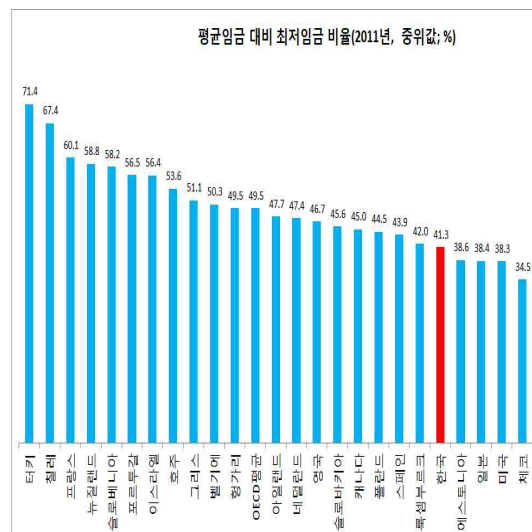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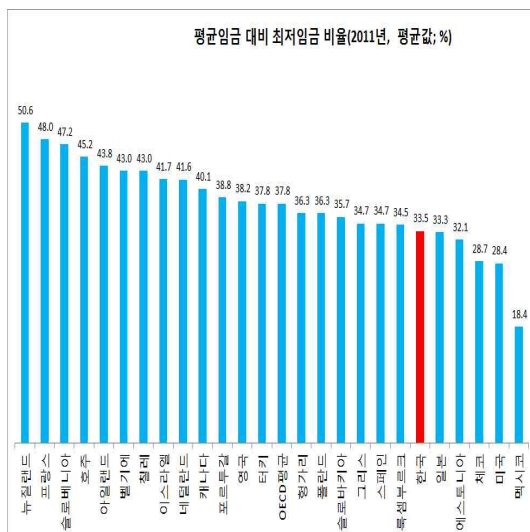


2. 최저임금 수준

1)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OECD 국가 풀타임 노동자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00년 35.5%에서 2011년 37.8%로 높아졌다. 중위값 기준으로 45.0%와 49.5%로 마찬가지로. 이는 2000년대 들어 저임금계층이 늘고 임금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ILO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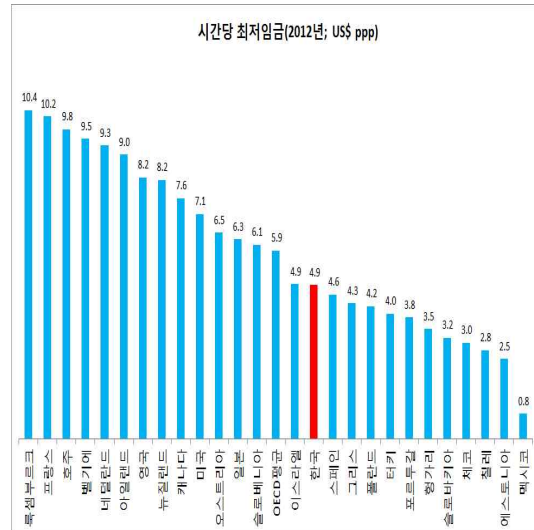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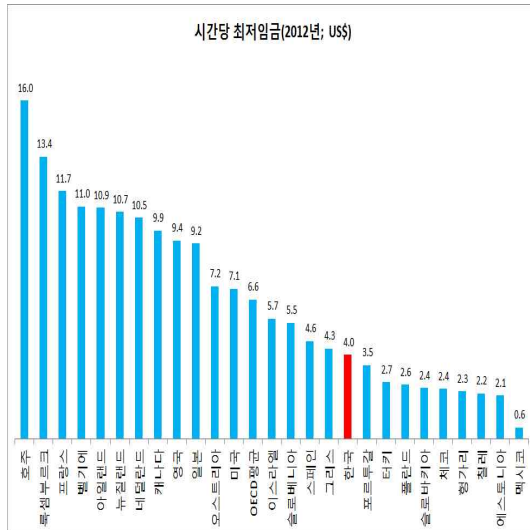
한국도 2000년 22.0%에서 2011년 33.5%로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조사에 응한 25개 회원국 중 20위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한국보다 최저임금 비율이 낮은 나라는 일본(33.3%), 에스토니아(32.1%), 체코(28.7%), 미국(28.4%), 멕시코(18.4%) 다섯 나라다. 중위값 기준으로는 41.3%지만, 24개 회원국 중 20위로 순위에는 변함이 없다.



2) 시간당 최저임금

2012년 OECD 회원국의 최저임금 평균은 6.60달러로 한국(3.98달러)보다 2.6달러 높다. 한국은 26개 회원국 중 17위로 낮은 편에 속한다. 호주(16.0달러), 룩셈부르크(13.4달러), 프랑스(11.7달러), 벨기에(11.0달러), 아일랜드(10.9달러), 뉴질랜드(10.7달러), 네덜란드(10.5달러)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0달러가 넘는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포르투갈(3.5달러), 터키(2.7달러), 폴란드(2.6달러), 슬로바키아(2.4달러), 체코(2.4달러), 헝가리(2.3달러), 칠레(2.2달러), 에스토니아(2.1달러), 멕시코(0.6달러) 아홉 나라다. 구매력 평가지수를 사용해도 한국은 4.86달러로, OECD 평균(5.94달러)에 못

미친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에 스페인과 그리스 두 나라가 추가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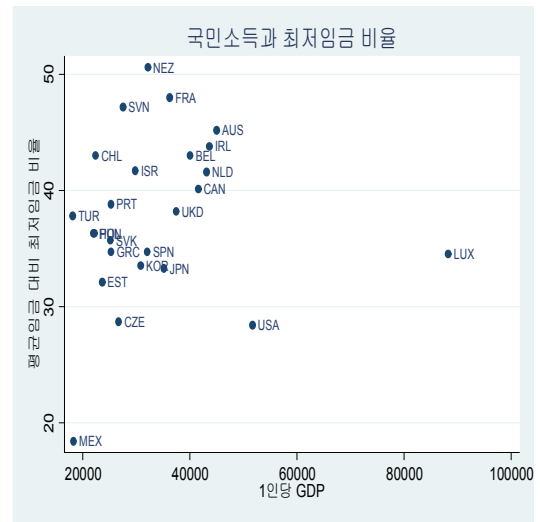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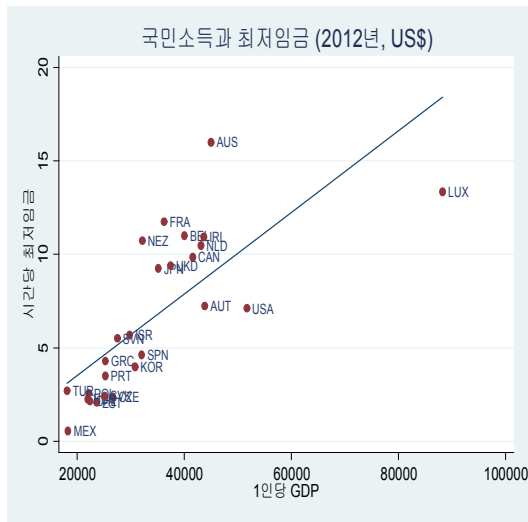


3) 국민소득과 최저임금

국민소득(1인당 GDP)과 시간당 최저임금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국민소득 수준이 높으면 시간당 최저임금도 높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국민소득 수준이 비슷해도 프랑스는 11.7달러, 영국은 9.4달러로 차이가 나고, 국민소득 수준이 훨씬 높은 미국은 최저임금이 7.1달러밖에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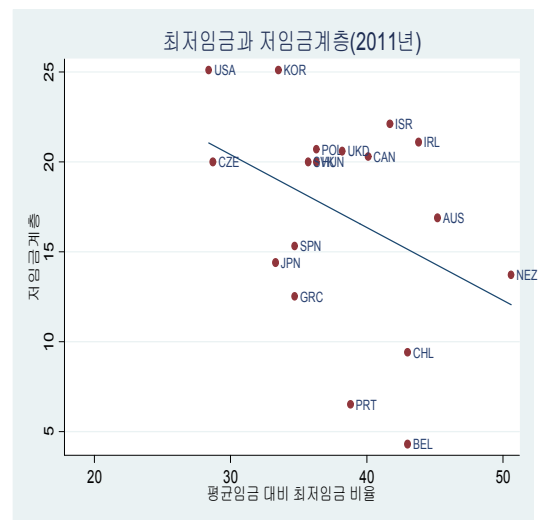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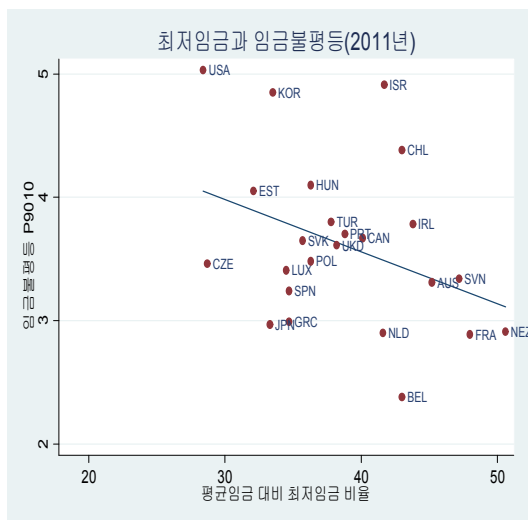
게다가 국민소득과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다. 국민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뉴질랜드, 프랑스, 슬로베니아, 호주, 아일랜드, 벨기에는 최저임금 비율이 높고, 미국, 일본, 체코, 한국은 최저임금 비율이 낮다.

이는 최저임금의 절대수준(시간당 최저임금)은 국민소득이나 경제발전의 영향을 받지만, 최저임금의 상대수준(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국민소득이나 경제발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노사 교섭력, 집권정당의 성격, 사회문화 가치 등 경제외적 요인의 영향을 받음을 말해준다.



4) 최저임금과 임금불평등, 저임금계층

최저임금이 임금불평등과 저임금계층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에 달려 있다. 최저임금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임금불평등과 저임금계층이 적다. 즉 최저임금과 임금불평등 및 저임금계층 사이에 (-)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이는 최저임금이 임금불평등과 저임금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수단임을 말해준다(Metcalf 1999).



제3절 어떤 자료를, 어떤 기준에서 사용할 것인가?

가. 중장기 목표 : 평균임금의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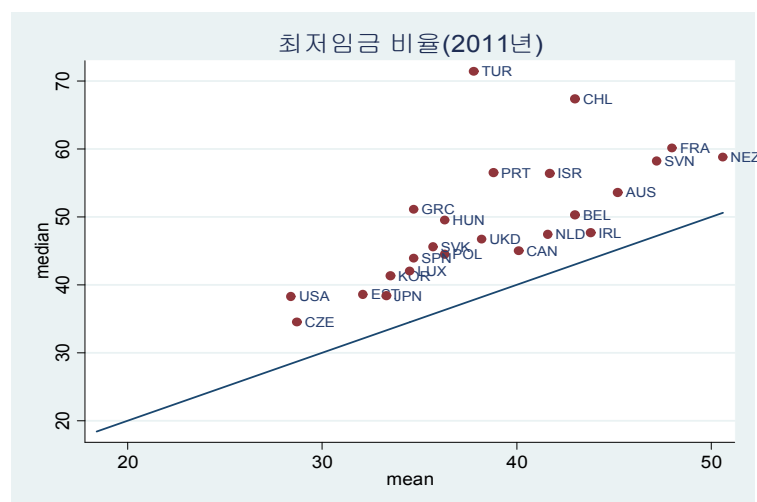
1) 평균값? 중위값?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에서 평균임금은 평균값(mean)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중위값(median)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평균값으로 계산할 때는 ‘평균임금의 50%’를 목표로 정하면 되고, 중위값으로 계산할 때는 저임금 기준선인 ‘중위임금의 2/3(또는 60%)’를 목표로 정하면 된다.

하지만 ‘중위임금의 2/3’보다는 ‘평균임금의 50%’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① 임금수준 통계인 사업체노동력조사(구 매월노동통계조사)가 평균값만 조사 발표하고 있고, ② 한국에서 중위값은 일반인에게 생소한 개념이며, ③ 저임금 노동자가 광범위할 때 ‘중위임금의 50%’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고스란히 반영하게 되어 ‘저임금 노동 일소’라는 최저임금 목표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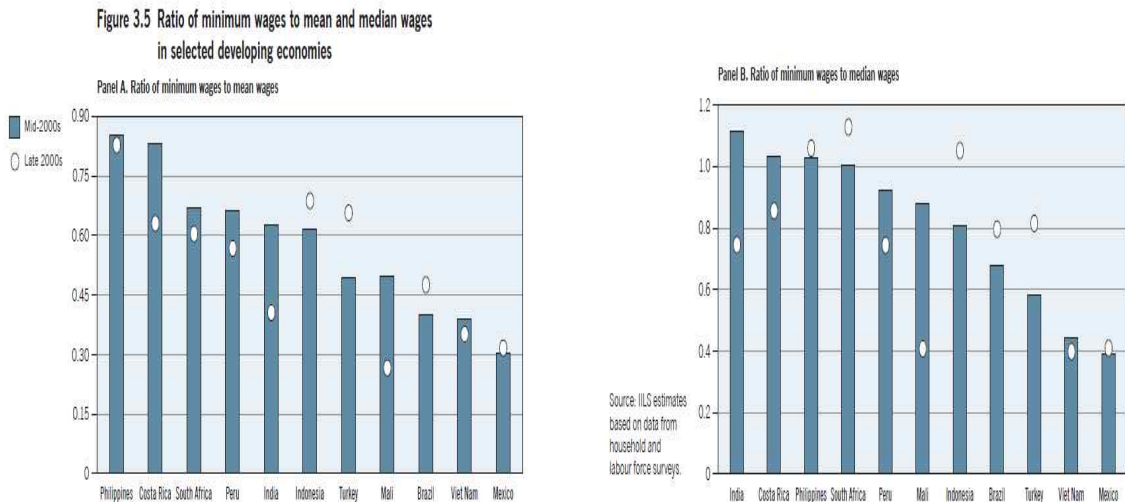
[참고1] OECD 국가 최저임금 비율(자료: OECD.stat)

한국은 2011년 최저임금이 풀타임 노동자 평균임금의 33.5%, 중위임금의 41.3%로 7.8%p 차이가 나는데 비해, 터키는 평균임금의 37.8%, 중위임금의 71.4%로 33.6%p 차이가 난다. 이는 터키 노동자 다수가 저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2] ILO(2013), *World of Work Report 2013*.

11개 개발도상국의 최저임금은 평균임금(mean)의 28~83%이고, 중위임금(median)의 40~110%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남아공 3개국은 최저임금이 중위임금(median)의 100%보다 높은데, 이는 그만큼 많은 노동자들이 저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2) 비교대상과 사용통계

지금까지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계산할 때는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구 매월노동통계조사)에서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임금’ 자료를 사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정부 일각에서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 임금’ 자료를 사용하자고 주장한다.

형식 논리상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 임금’과 비교하자는 주장이 전적으로 잘못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① 5인 미만 사업체는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는 비공식 부문인데, 과연 5인 미만 사업체 임금통계를 신뢰할 수 있는가, ② 저임금 부문인 5인 미만 사업체와 임시직, 일용직 임금은 포함하면서 고임금 부문인 공무원과 교원 임금은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③ 저임금 일소,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함에 있어 굳이 ‘5인 미만 사업체, 임시 일용직 임금’을 포함시켜 비교하는 게 바람직한가²⁾ 등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일본은 5인 이상 사업체 조사, 유럽연합 각국은 10인 이상 사업체 조사결

2) OECD는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계산할 때 파트타임을 제외하고 풀타임 노동자 임금을 비교한다. 이는 최저임금 수준을 정함에 있어 비정규직(파트타임) 임금을 포함시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과 임시, 일용직 노동자 임금을 포함시켜 최저임금 비율을 계산하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어날수록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높아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겨난다.

과를 OECD에 제출하고 있다.

3) 시간당 임금? 월환산임금?

최저임금위원회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결정할 뿐, 월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않는다. 시간당 최저임금에 209시간을 곱해 월환산임금을 구한 뒤 참고지표로 활용할 뿐이다. 2013년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노동시간이 월 165.6시간인데도 209시간을 곱하는 것은, 한 달 177시간 근무에 유급주휴 4일 32시간을 더해 209시간 분의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용직, 호출근로 등은 유급주휴수당 적용대상조차 아니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계산할 때는 시간당 평균임금과 최저임금을 사용해야 한다.

4) 정액급여? 통상임금?

노동부의 각종 임금조사는 임금총액을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로 구분하고 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을 논의할 때 임금구성항목 중 정액급여를 사용한 것은, 정상근로시간 일해서 받는 통상임금 개념에 정액급여가 가장 가깝다는 판단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2013년 말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을 '정액급여+(고정적) 특별급여'로 정의하고, 정액급여 대신 통상임금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5) 종합

노동계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시간당 정액급여(또는 통상임금) 평균값을 사용하고, 정부 일각에서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월정액급여 평균값 또는 중위값을 선호한다.

<표1>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2013년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시간당 정액급여는 1만 5,567원이고 통상임금은 1만 8,807원이다. 2013년 최저임금 4,860원은 정액급여의 31.2%, 통상임금의 25.8%다. 따라서 평균임금의 50% 목표를 달성하려면 상당 기간에 걸쳐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비해 <표2>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2013년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월정액급여 평균값은 217만원이고 중위값은 174만원이다. 2013년 월환산 최저임금 101만 5,740원은 정액급여 평균값의 46.8%, 중위값의 58.5%다. 따라서 이미 평균임금의 50% 목표에 근접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는 현행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고 있다는 일반의 인식과도 배치된다.

<표1> 사업체 규모별 임금수준 (2013년, 5인 이상 상용직, 평균값)

		월 임금(천원)			시간당 임금(원)			월환산 최저임금 /월임금(%)			시간당 최저임금 /시급(%)		
		정액 급여	통상 임금	임금 총액	정액 급여	통상 임금	임금 총액	정액 급여	통상 임금	임금 총액	정액 급여	통상 임금	임금 총액
평 균 값	5인이상	2,578	3,114	3,299	15,567	18,807	18,521	39.4	32.6	30.8	31.2	25.8	26.2
	10인이상	2,665	3,267	3,476	16,257	19,934	19,538	38.1	31.1	29.2	29.9	24.4	24.9
	30인이상	2,786	3,526	3,775	17,275	21,862	21,268	36.5	28.8	26.9	28.1	22.2	22.9
	5~299인	2,433	2,778	2,938	14,492	16,544	16,359	41.7	36.6	34.6	33.5	29.4	29.7
	5~9인	2,133	2,330	2,389	12,221	13,352	13,355	47.6	43.6	42.5	39.8	36.4	36.4
	10~29인	2,395	2,695	2,815	14,132	15,897	15,742	42.4	37.7	36.1	34.4	30.6	30.9
	30~99인	2,546	2,926	3,145	15,470	17,778	17,392	39.9	34.7	32.3	31.4	27.3	27.9
	100~299인	2,678	3,222	3,484	16,528	19,887	19,323	37.9	31.5	29.2	29.4	24.4	25.2
	300인이상	3,093	4,313	4,583	19,624	27,368	26,569	32.8	23.5	22.2	24.8	17.8	18.3

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 2013년

주: 1) 2013년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월 209시간 월환산액 101만 5,740원)

2) 통상임금 = 정액급여+특별급여

<표2>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별 임금수준 (2013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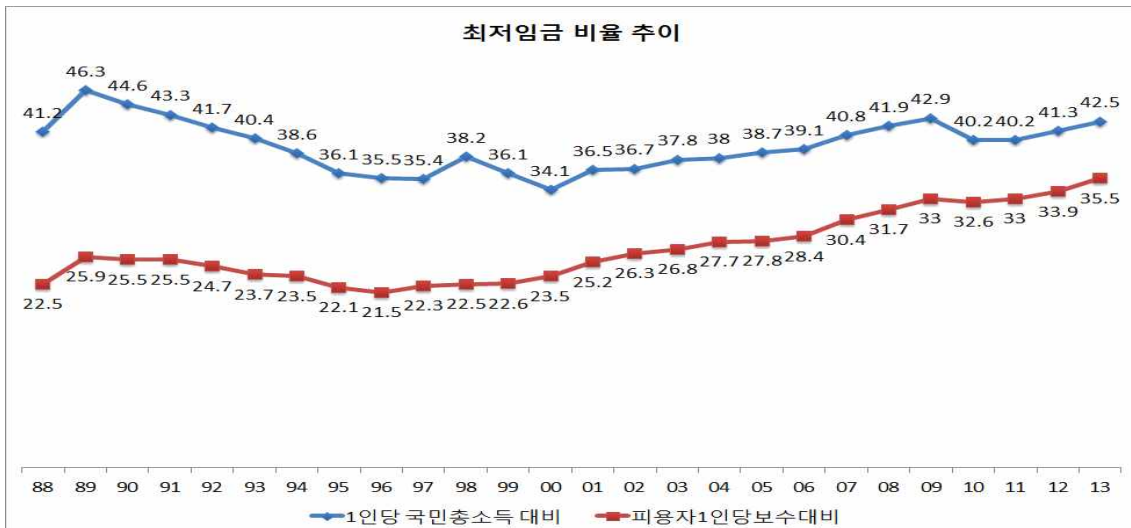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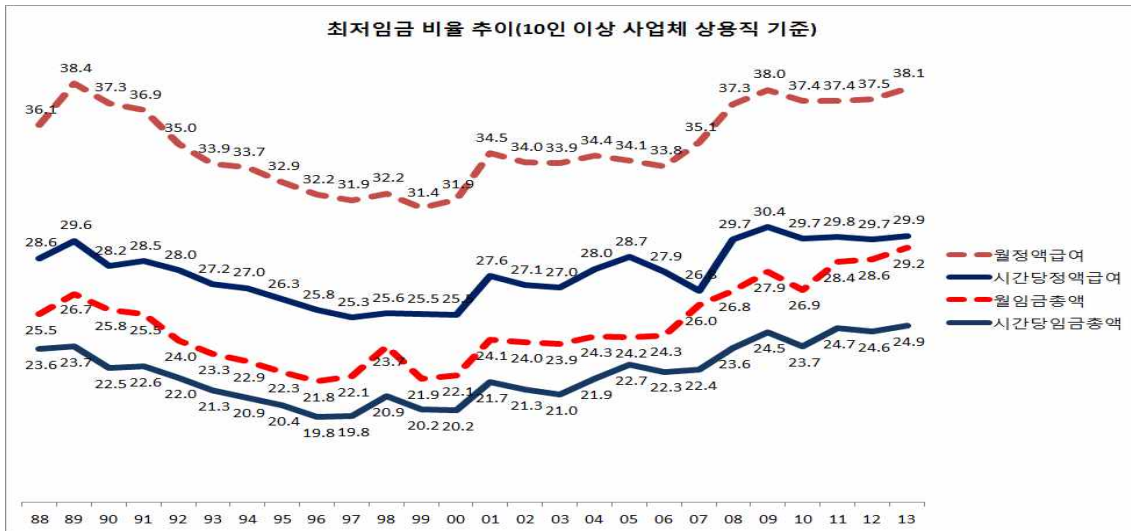
			월 임금(천원)			시간당 임금(원)			월환산 최저임금 /월임금(%)			시간당 최저임금 /시급(%)		
			정액 급여	통상 임금	임금 총액	정액 급여	통상 임금	임금 총액	정액 급여	통상 임금	임금 총액	정액 급여	통상 임금	임금 총액
전 국 모 로	평 균 값	전체	2,169	2,480	2,621	14,310	16,340	16,201	46.8	41.0	38.8	34.0	29.7	30.0
		5인미만	1,618	1,675	1,687	10,784	11,137	11,122	62.8	60.6	60.2	45.1	43.6	43.7
		5~29인	2,125	2,318	2,406	13,785	15,019	14,978	47.8	43.8	42.2	35.3	32.4	32.4
		30~299인	2,361	2,710	2,964	15,428	17,681	17,518	43.0	37.5	34.3	31.5	27.5	27.7
		300인이상	3,061	4,134	4,445	20,870	27,993	27,396	33.2	24.6	22.9	23.3	17.4	17.7
		정규직	2,390	2,809	2,985	15,001	17,723	17,525	42.5	36.2	34.0	32.4	27.4	27.7
		비정규직	1,578	1,605	1,654	12,469	12,657	12,675	64.4	63.3	61.4	39.0	38.4	38.3
		풀타임	2,315	2,667	2,824	14,650	16,940	16,784	43.9	38.1	36.0	33.2	28.7	29.0
		시간제	1,051	1,055	1,070	11,712	11,751	11,741	96.6	96.3	94.9	41.5	41.4	41.4
	중 위 값	전체	1,735	1,892	2,033	11,095	12,059	12,039	58.5	53.7	50.0	43.8	40.3	40.4
		5인미만	1,339	1,380	1,400	8,375	8,553	8,553	75.9	73.6	72.6	58.0	56.8	56.8
		5~29인	1,734	1,819	1,921	11,111	11,625	11,625	58.6	55.8	52.9	43.7	41.8	41.8
		30~299인	1,919	2,220	2,524	12,341	14,226	14,061	52.9	45.8	40.2	39.4	34.2	34.6
		300인이상	2,594	3,714	4,046	17,480	24,981	24,270	39.2	27.3	25.1	27.8	19.5	20.0
		정규직	1,951	2,199	2,396	11,905	13,428	13,349	52.1	46.2	42.4	40.8	36.2	36.4
		비정규직	1,181	1,200	1,256	8,927	9,107	9,159	86.0	84.6	80.9	54.4	53.4	53.1
		풀타임	1,846	2,033	2,203	11,333	12,500	12,494	55.0	50.0	46.1	42.9	38.9	38.9
		시간제	776	780	788	8,888	8,955	8,950	130.9	130.2	128.9	54.7	54.3	54.3
5 인 이 상	평 균 값	5인이상	2,385	2,797	2,989	15,698	18,389	18,201	42.6	36.3	34.0	31.0	26.4	26.7
		정규직	2,554	3,055	3,273	16,243	19,514	19,272	39.8	33.2	31.0	29.9	24.9	25.2
		비정규직	1,697	1,744	1,830	13,473	13,793	13,826	59.9	58.2	55.5	36.1	35.2	35.2
		풀타임	2,475	2,919	3,124	15,795	18,692	18,491	41.0	34.8	32.5	30.8	26.0	26.3
		시간제	1,235	1,240	1,266	14,464	14,512	14,488	82.2	81.9	80.2	33.6	33.5	33.5
	중	5인이상	1,932	2,187	2,407	12,500	14,006	13,899	52.6	46.4	42.2	38.9	34.7	35.0

위 급	정규직	2,100	2,455	2,698	13,131	15,283	15,132	48.4	41.4	37.6	37.0	31.8	32.1
	비정규직	1,290	1,322	1,446	9,881	10,109	10,163	78.7	76.8	70.2	49.2	48.1	47.8
	풀타임	2,000	2,290	2,518	12,500	14,280	14,174	50.8	44.4	40.3	38.9	34.0	34.3
	시간제	895	900	900	11,971	12,000	12,026	113.5	112.9	112.9	40.6	40.5	40.4

자료: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 2013년

주: 1) 2013년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월 209시간 월환산액 101만 5,740원)

2) 통상임금 = 정액급여+특별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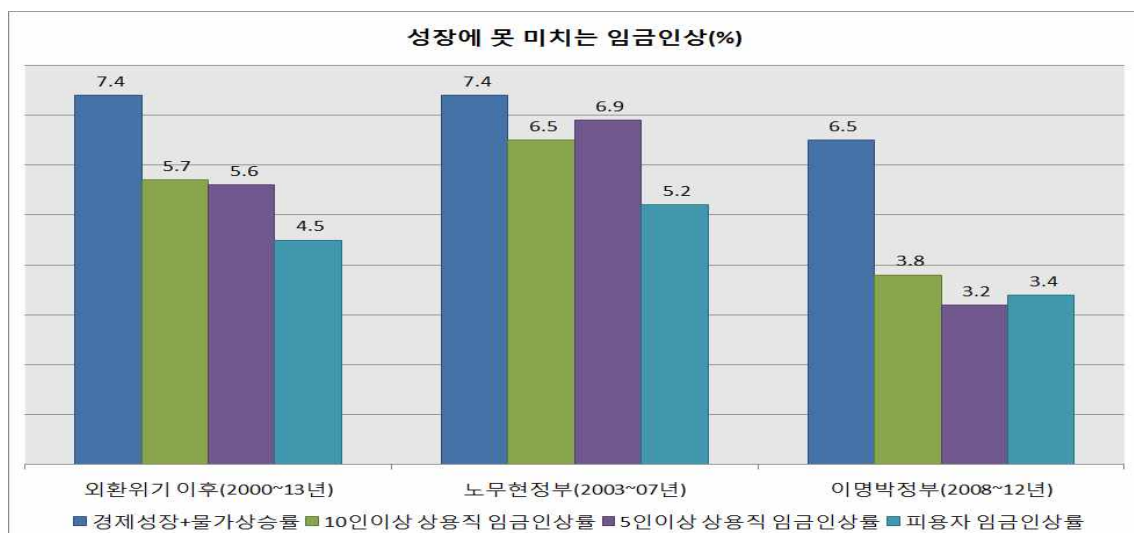
나. 최저임금 인상 하한선 =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α

생산성임금제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의 임금인상률이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과 일치하면 분배구조에 변함이 없고,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면 분배구조가 악화되고,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을 넘어서면 분배구조가 개선된다.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은 연평균 7.4%다.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은 5.6%로 매년 1.8%p 덜 올랐다.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에서 계산한 피용자 1인당 보수 인상률은 4.5%로 매년 2.9%p 덜 올랐다. 이처럼 경제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은 분배구조의 악화로 이어져, 조정 노동소득분배율은 2000년 91.5%에서 2013년 84.6%로 6.9%p 떨어졌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 때는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은 연평균 6.5%인데,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은 3.2%로 매년 3.3%p 덜 올랐고, 피용자 1인당 보수 인상률은 3.4%로 3.1%p 덜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률마저 5.7%로 매년 0.8%p 덜 올랐다. 그 결과 조정 노동소득분배율은 2008년 90.1%에서 2013년 84.6%로 5.5%p 떨어졌다.

이명박 정부 때 악화된 분배구조를 개선하려면 앞으로 5년 동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은 매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3.1~3.3%)’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이보다 높게 책정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부표1> 연도별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연도	최저임금			주요 경제지표(%)				노동소득분배율(%)		
	시간급 (원)	월 노동 시간	월 환산액 (천원)	경제 성장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지수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노동 소득 분배율	취업자 대비 노동자 비율	조정 노동 소득 분배율
1988	475	240	114	11.7	7.1	38.8	18.8	53.4	57.0	93.7
1989	600	240	144	6.8	5.7	41.0	12.5	55.6	59.2	94.0
1990	690	240	166	9.3	8.6	44.5	17.9	57.0	60.5	94.1
1991	820	235	193	9.7	9.3	48.7	19.0	58.0	62.7	92.5
1992	925	226	209	5.8	6.2	51.7	12.0	57.9	62.7	92.4
1993	1,005	226	227	6.3	4.8	54.2	11.1	58.2	62.1	93.7
1994	1,113	226	252	8.8	6.3	57.6	15.1	58.4	62.9	92.9
1995	1,205	226	272	8.9	4.5	60.2	13.4	60.4	63.2	95.6
1996	1,317	226	298	7.2	4.9	63.2	12.1	62.6	63.3	98.9
1997	1,428	226	323	5.8	4.4	66.0	10.2	61.4	63.2	97.2
1998	1,498	226	339	-5.7	7.5	70.9	1.8	60.6	61.7	98.3
1999	1,550	226	350	10.7	0.8	71.5	11.5	59.0	62.4	94.5
2000	1,688	226	382	8.8	2.3	73.1	11.1	57.8	63.1	91.5
2001	1,943	226	439	4.5	4.1	76.1	8.6	58.9	63.3	93.0
2002	2,158	226	488	7.4	2.8	78.2	10.2	58.2	64.0	91.0
2003	2,353	226	532	2.9	3.5	80.9	6.4	59.6	65.1	91.6
2004	2,620	220	576	4.9	3.6	83.8	8.5	59.1	66.0	89.5
2005	2,927	209	612	3.9	2.8	86.1	6.7	61.2	66.4	92.1
2006	3,100	209	648	5.2	2.2	88.1	7.4	61.8	67.2	92.0
2007	3,480	209	727	5.5	2.5	90.3	8.0	61.2	68.2	89.8
2008	3,770	209	788	2.8	4.7	94.5	7.5	61.9	68.7	90.1
2009	4,000	209	836	0.7	2.8	97.1	3.5	61.9	70.0	88.4
2010	4,110	209	859	6.5	3.0	100.0	9.5	59.4	71.2	83.4
2011	4,320	209	903	3.7	4.0	104.0	7.7	59.9	71.8	83.5
2012	4,580	209	957	2.3	2.2	106.3	4.5	60.9	71.8	84.9
2013	4,860	209	1,016	3.0	1.3	107.7	4.3	61.4	72.6	84.6
90-'13	2,394	220	516	5.4	4.1	77.3	9.5	59.9	65.6	91.5
90-'00	1,204	228	274	6.9	5.4	60.1	12.3	59.2	62.5	94.7
00-'13	3,279	215	697	4.4	3.0	90.4	7.4	60.2	67.8	89.0
93-97	1,214	226	274	7.4	5.0	60.2	12.4	60.2	62.9	95.7
98-02	1,768	226	399	5.1	3.5	74.0	8.6	58.9	62.9	93.7
03-07	2,896	215	619	4.5	2.9	85.8	7.4	60.6	66.6	91.0
08-12	4,156	209	869	3.2	3.3	100.4	6.5	60.8	70.7	86.0

자료: KOSIS

<부표2> 명목임금 수준과 인상률 추이

	명목임금 수준(월, 천원)				명목임금 인상률(%)				최저임금인상률(%)	
	10인 이상 상용직	5인 이상 상용직	피용자 1인당 보수	1인당 국민 총소득	10인 이상 상용직	5인 이상 상용직	피용자 1인당 보수	1인당 국민 총소득	시간급	월 환산액
1988	446		506	277						
1989	541		557	311	21.1		10.1	12.3	26.3	26.3
1990	642		649	372	18.8		16.6	19.6	15.0	15.0
1991	755		757	445	17.5		16.6	19.7	18.8	16.4
1992	869		845	502	15.2		11.7	12.7	12.8	8.5
1993	975		957	562	12.2		13.1	12.0	8.6	8.6
1994	1,099		1,073	652	12.7		12.2	16.0	10.8	10.8
1995	1,222		1,233	754	11.2		15.0	15.7	8.2	8.2
1996	1,368		1,385	839	11.9		12.3	11.3	9.3	9.3
1997	1,463		1,446	912	7.0		4.4	8.6	8.5	8.5
1998	1,427		1,506	887	2.5		4.1	2.7	4.9	4.9
1999	1,599	1,544	1,553	969	12.1		3.1	9.3	3.4	3.4
2000	1,727	1,668	1,625	1,118	8.0	8.0	4.7	15.4	8.9	8.9
2001	1,825	1,752	1,743	1,203	5.6	5.1	7.2	7.5	15.1	15.1
2002	2,036	1,948	1,853	1,328	11.6	11.2	6.3	10.5	11.1	11.1
2003	2,228	2,127	1,987	1,407	9.4	9.2	7.3	5.9	9.0	9.0
2004	2,373	2,255	2,083	1,517	6.5	6.0	4.8	7.8	11.3	8.3
2005	2,525	2,404	2,203	1,580	6.4	6.6	5.8	4.2	11.7	6.2
2006	2,667	2,542	2,284	1,658	5.6	5.7	3.7	5.0	5.9	5.9
2007	2,793	2,716	2,389	1,783	4.7	6.9	4.6	7.5	12.3	12.3
2008	2,940	2,802	2,484	1,880	5.3	3.1	3.9	5.4	8.3	8.3
2009	3,001	2,863	2,537	1,947	2.1	2.2	2.1	3.5	6.1	6.1
2010	3,196	3,047	2,634	2,136	6.5	6.4	3.8	9.7	2.8	2.8
2011	3,176	3,019	2,732	2,244	-0.6	-0.9	3.7	5.1	5.1	5.1
2012	3,352	3,178	2,820	2,319	5.6	5.3	3.2	3.3	6.0	6.0
2013	3,476	3,299	2,859	2,392	3.7	3.8	1.4	3.1	6.1	6.1
90-'13	2,031		1,818	1,309	8.2		7.2	9.0	9.2	8.5
90-'00	1,195		1,184	728	11.3		10.3	12.5	9.9	9.3
00-'13	2,665	2,544	2,302	1,751	5.7	5.6	4.5	6.7	8.6	7.9
93-97	1,225		1,219	744	11.0		11.4	12.7	9.1	9.1
98-02	1,723		1,656	1,101	7.0		5.1	8.0	8.7	8.7
03-07	2,517	2,409	2,189	1,589	6.5	6.9	5.2	6.1	10.1	8.3
08-12	3,133	2,982	2,641	2,105	3.8	3.2	3.4	5.4	5.7	5.7

자료: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국민소득.

<부표3> 실질임금 수준과 인상률 추이

	실질임금(월, 천원)				실질임금 인상률(%)				실질최저임금 인상률(%)	
	10인 이상 상용직	5인 이상 상용직	피용자 1인당 보수	1인당 국민 총소득	10인 이상 상용직	5인 이상 상용직	피용자 1인당 보수	1인당 국민 총소득	시간급	월 환산액
1988	1,150		1,303	713						
1989	1,319		1,358	758	14.6		4.2	6.3	19.5	19.5
1990	1,443		1,458	835	9.5		7.4	10.2	6.0	6.0
1991	1,550		1,554	914	7.4		6.6	9.4	8.6	6.3
1992	1,681		1,635	970	8.5		5.2	6.2	6.3	2.2
1993	1,799		1,765	1,036	7.0		7.9	6.8	3.6	3.6
1994	1,908		1,863	1,131	6.0		5.5	9.2	4.2	4.2
1995	2,030		2,049	1,253	6.4		10.0	10.7	3.6	3.6
1996	2,164		2,191	1,328	6.6		7.0	6.0	4.1	4.1
1997	2,217		2,191	1,381	2.5		-0.0	4.0	3.9	3.9
1998	2,012		2,124	1,251	-9.2		-3.1	-9.5	-2.3	-2.3
1999	2,237	2,159	2,171	1,355	11.1		2.2	8.4	2.6	2.6
2000	2,363	2,281	2,224	1,530	5.6	5.7	2.4	12.9	6.5	6.5
2001	2,398	2,303	2,290	1,580	1.5	0.9	3.0	3.3	10.6	10.6
2002	2,604	2,491	2,370	1,699	8.6	8.2	3.5	7.5	8.1	8.1
2003	2,755	2,630	2,457	1,739	5.8	5.6	3.7	2.4	5.4	5.4
2004	2,831	2,691	2,485	1,810	2.8	2.3	1.2	4.1	7.5	4.6
2005	2,933	2,793	2,559	1,835	3.6	3.8	3.0	1.4	8.7	3.4
2006	3,027	2,885	2,592	1,882	3.2	3.3	1.3	2.6	3.5	3.5
2007	3,093	3,008	2,646	1,975	2.2	4.3	2.1	4.9	9.5	9.5
2008	3,111	2,965	2,628	1,989	0.6	-1.4	-0.7	0.7	3.5	3.5
2009	3,090	2,949	2,613	2,005	- 0.7	-0.5	-0.6	0.8	3.3	3.3
2010	3,196	3,047	2,634	2,136	3.4	3.3	0.8	6.5	-0.2	-0.2
2011	3,054	2,903	2,627	2,158	-4.4	-4.7	-0.3	1.0	1.1	1.1
2012	3,154	2,990	2,653	2,182	3.3	3.0	1.0	1.1	3.7	3.7
2013	3,227	3,063	2,655	2,221	2.3	2.4	0.1	1.8	4.7	4.7
90-'13	2,495		2,268	1,591	3.9		2.9	4.7	4.8	4.2
90-'00	1,946		1,930	1,180	5.6		4.7	6.8	4.3	3.7
00-'13	2,917	2,786	2,531	1,910	2.7	2.6	1.5	3.6	5.4	4.8
93-97	2,024		2,012	1,226	5.7		6.1	7.3	3.9	3.9
98-02	2,323	2,308	2,236	1,483	3.5		1.6	4.5	5.1	5.1
03-07	2,928	2,801	2,548	1,848	3.5	3.9	2.2	3.1	6.9	5.3
08-12	3,121	2,971	2,631	2,094	0.4	-0.1	0.1	2.0	2.3	2.3

자료: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국민소득.

<부표4> 연도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추이(단위:%)

연도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5인이상 사업체 상용직						1인당 월국민 총소득	피용자 1인당 월임금
	월			시간당			월			시간당				
	임금	정액	통상	임금	정액	통상	임금	정액	통상	임금	정액	통상		
	총액	급여	임금	총액	급여	임금	총액	급여	임금	총액	급여	임금		
1988	25.5	36.1	29.0	23.6	28.6	23.0							41.2	22.5
1989	26.6	38.4	30.0	23.7	29.6	23.1							46.3	25.9
1990	25.8	37.3	28.9	22.5	28.2	21.9							44.6	25.5
1991	25.5	36.9	28.5	22.6	28.5	22.0							43.3	25.5
1992	24.0	35.0	26.7	22.0	28.0	21.3							41.7	24.7
1993	23.3	33.9	25.7	21.3	27.2	20.6							40.4	23.7
1994	22.9	33.7	25.2	20.9	27.0	20.1							38.6	23.5
1995	22.3	32.9	24.5	20.4	26.3	19.6							36.1	22.1
1996	21.8	32.2	23.8	19.8	25.8	19.0							35.5	21.5
1997	22.1	31.9	24.0	19.8	25.3	19.1							35.4	22.3
1998	23.7	32.2	25.5	20.9	25.6	20.2							38.2	22.5
1999	21.9	31.4	23.9	20.2	25.5	19.3	22.7	31.8	24.6	20.7	25.9	20.0	36.1	22.6
2000	22.1	31.9	24.2	20.2	25.5	19.3	22.9	32.3	24.9	20.7	25.9	20.0	34.1	23.5
2001	24.1	34.5	26.2	21.7	27.6	21.0	25.1	34.9	27.1	22.5	28.2	21.8	36.5	25.2
2002	24.0	34.0	25.8	21.3	27.1	20.6	25.0	34.6	26.8	22.1	27.8	21.5	36.7	26.3
2003	23.9	33.9	25.6	21.0	27.0	20.4	25.0	34.7	26.7	21.9	27.7	21.3	37.8	26.8
2004	24.3	34.4	26.0	21.9	28.0	21.2	25.5	35.2	27.2	22.9	28.9	22.3	38.0	27.7
2005	24.2	34.1	26.0	22.7	28.7	21.9	25.4	34.8	27.1	23.7	29.6	23.0	38.7	27.8
2006	24.3	33.8	26.1	22.3	27.9	21.5	25.5	34.6	27.2	23.3	28.8	22.6	39.1	28.4
2007	26.0	35.1	27.6	22.4	26.8	21.1	26.8	35.9	28.9	23.1	27.5	22.1	40.8	30.4
2008	26.8	37.3	28.8	23.6	29.7	22.9	28.1	38.3	30.0	24.9	30.9	24.3	41.9	31.7
2009	27.9	38.0	29.8	24.5	30.4	23.8	29.2	39.1	31.1	25.8	31.7	25.2	42.9	33.0
2010	26.9	37.4	28.9	23.7	29.7	22.9	28.2	38.4	30.1	24.9	31.0	24.3	40.2	32.6
2011	28.4	37.4	30.4	24.7	29.8	24.2	29.9	38.6	31.8	26.1	31.1	25.6	40.2	33.0
2012	28.6	37.5	30.4	24.6	29.7	24.1	30.1	38.8	31.9	25.9	31.0	25.6	41.3	33.9
2013	29.2	38.1	31.1	24.9	29.9	24.4	30.8	39.4	32.6	26.2	31.2	25.8	42.5	35.5
90-'13	24.7	34.8	26.8	22.1	27.7	21.4							39.2	27.1
90-'00	23.2	33.6	25.5	21.0	26.6	20.2							38.5	23.4
00-'13	25.8	35.5	27.6	22.8	28.4	22.1	27.0	36.4	28.8	23.9	29.4	23.2	39.3	29.7
93-97	22.5	32.9	24.6	20.4	26.3	19.7							37.2	22.6
98-02	23.2	32.8	25.1	20.9	26.3	20.1	23.9	33.4	25.8	21.5	26.9	20.8	36.3	24.0
03-07	24.5	34.3	26.3	22.1	27.7	21.2	25.7	35.0	27.4	23.0	28.5	22.3	38.9	28.2
08-12	27.7	37.5	29.7	24.2	29.8	23.6	29.1	38.6	31.0	25.5	31.1	25.0	41.3	32.9

자료: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2006년까지는 매월노동통계조사); 한국은행, 국민소득

<부표5> 임금불평등(D9/D1, 단위: 배)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순위
호주	3.01	3.12	3.26	3.31	3.34	3.33	3.33	3.31		15
오스트리아		3.26	3.30	3.37	3.32	3.36	3.39	3.34		18
벨기에	2.37	2.49	2.43	2.33	2.25	2.30	2.38	2.38		4
캐나다	3.61	3.74	3.74	3.75	3.75	3.70	3.71	3.67		24
칠레	6.25		5.31			4.91		4.38		30
체코	2.90	3.10	3.11	3.11	3.15	3.19		3.46		20
덴마크	2.51	2.64	2.67	2.69	2.73	2.73	2.80	2.80		7
에스토니아								4.05		28
핀란드	2.41	2.49	2.47	2.55	2.57	2.59	2.52	2.58		5
프랑스	3.10	2.91	2.90	2.91	2.91	2.89		2.89		9
독일	3.04	3.17	3.36	3.26	3.20	3.29	3.33	3.33		16
그리스		3.36	3.33	3.43	3.26		3.24	2.99		13
헝가리	4.66	4.46	4.56	4.20	4.11	4.28	4.25	4.10		29
아이슬란드		3.11	3.10	3.19	3.21			2.88		8
아일랜드	3.27	3.73	3.92	3.78	3.75	3.94	3.63	3.78		26
이스라엘		5.11	4.98	5.14	5.18	5.19	4.98	4.91		32
이탈리아	2.22		2.36		2.27		2.22	2.22		1
일본	2.98	3.12	3.11	3.06	3.02	2.99	2.96	2.97		12
한국	4.04	4.48	4.56	4.74	4.78	4.69	4.72	4.85		31
룩셈부르크								3.41		19
멕시코										
네덜란드	2.90	2.91						2.90		10
뉴질랜드	2.63	2.77	2.84	2.92	2.92	2.83	2.83	2.91		11
노르웨이	2.00	2.12	2.15	2.23	2.26	2.29	2.30	2.34		3
폴란드		4.13	4.40	4.08	3.64		3.52	3.48		21
포르투갈		4.31	4.29	4.31	4.25		3.69	3.70		25
슬로바키아		3.40	3.51	3.46	3.54	3.60	3.67	3.65		23
슬로베니아								3.34		17
스페인		3.47	3.50	3.47	3.28	3.37	3.30	3.24		14
스웨덴	2.35	2.23	2.31	2.34	2.28	2.28	2.23	2.31		2
스위스	2.56		2.65		2.69		2.70	2.70		6
터키								3.80		27
영국	3.46	3.60	3.62	3.59	3.63	3.60	3.58	3.61		22
미국	4.49	4.86	4.84	4.85	4.89	4.98	5.01	5.03		33
OECD평균								3.37		
단순평균	3.18	3.39	3.45	3.44	3.34	3.47	3.35	3.37		
최대값	6.25	5.11	5.31	5.14	5.18	5.19	5.01	5.03		
최소값	2.00	2.12	2.15	2.23	2.25	2.28	2.22	2.22		
응답국가	21	26	28	25	27	22	24	33		

자료: 1) 2000~2010년은 OECD.Stat에서 2013.10.24. 추출

2) 2011년은 OECD(2013), *Employment Outlook*, p.262.

주: 순위는 2011년

<부표6> 저임금계층 비율 (단위: %)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순위
호주	14.6	15.9	15.2	16.0	17.5	14.4	16.1	16.9		14
오스트리아		15.3	15.8	16.2	15.9	16.0	16.5	16.1		12
벨기에		6.7	6.3	5.6	4.0	3.7	4.3	4.3		1
캐나다	23.2	21.3	22.5	22.0	22.1	20.5	21.1	20.3		19
칠레	27.0		19.9			18.5		9.4		5
체코	14.0	17.1	16.9	16.8	16.8	17.1		20.0		18
덴마크	8.8	11.3	11.9	12.0	13.0	13.6	13.4	16.7		13
에스토니아										
핀란드		6.9	7.5	7.9	8.5	8.5	8.1	9.3		4
프랑스										
독일	15.8	17.6	18.5	18.2	17.5	18.6	18.8	18.8		15
그리스		19.7	20.0	17.6	13.5		13.3	12.5		7
헝가리	23.4	23.1	23.1	21.2	20.8	21.8	21.0	20.0		16
아이슬란드		17.6	17.1	17.4	16.7			14.7		10
아일랜드	17.8	20.1	21.2	21.7	20.6	20.2	20.1	21.1		22
이스라엘		23.1	21.3	22.1	22.3	23.1	22.3	22.1		23
이탈리아			9.7		8.1		9.5	9.5		6
일본	14.6	16.1	16.1	15.4	15.1	14.7	14.5	14.4		9
한국	24.6	25.4	24.5	25.6	25.4	25.7	25.9	25.1		25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11.7	12.4	14.6	13.6	12.7	12.5	12.8	13.7		8
노르웨이										
폴란드		24.0	24.8	21.8	21.1		19.6	20.7		21
포르투갈		16.0	15.6	17.4	14.2		8.9	6.5		2
슬로바키아		18.0	18.0	18.0	19.0	20.0	20.0	20.0		17
슬로베니아										
스페인		15.9	17.6	16.0	15.7	16.4	15.6	15.3		11
스웨덴										
스위스	9.6		9.0		9.1		9.2	9.2		3
터키										
영국	20.4	20.7	20.7	20.5	21.2	20.6	20.7	20.6		20
미국	24.7	24.0	24.2	24.5	24.5	24.8	25.3	25.1		24
OECD평균								16.1		
단순평균	17.9	17.6	17.3	17.6	16.5	17.4	16.2	16.1		
최대값	27.0	25.4	24.8	25.6	25.4	25.7	25.9	25.1		
최소값	8.8	6.7	6.3	5.6	4.0	3.7	4.3	4.3		
응답국가	14	22	25	22	24	19	22	25		

자료: 1) 2000~2010년은 OECD.Stat에서 2013.10.24. 추출

2) 2011년은 OECD(2013), *Employment Outlook*, p.262.

주: 순위는 2011년

<부표7> 풀타임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평균값 기준, 단위: %)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순위
호주	50.2	49.5	46.4	45.5	45.0	44.6	45.1	45.2		4
오스트리아										
벨기에	45.8	44.0	43.0	43.2	44.0	43.9	43.2	43.0		6
캐나다	37.6	35.9	36.2	36.1	36.8	37.7	38.9	40.1		10
칠레	39.2		41.3			43.9		43.0		7
체코	27.3	33.2	33.9	32.5	30.4	30.0	29.4	28.7		23
덴마크										
에스토니아	26.3	30.9	28.9	28.4	32.1	34.4	34.0	32.1		22
핀란드										
프랑스	45.1	48.0	48.5	48.2	48.2	48.5	48.0	48.0		2
독일										
그리스	36.6	31.5	30.8	31.4	32.6	32.7	33.3	34.7		17
헝가리	28.2	36.1	36.4	35.2	35.1	34.8	34.7	36.3		14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58.5	46.2	44.2	44.7	44.4	43.3	43.7	43.8		5
이스라엘		40.3	41.5	41.5	41.2	41.6	41.2	41.7		8
이탈리아										
일본	28.4	29.3	29.6	29.8	30.4	31.6	32.6	33.3		21
한국	22.0	27.5	28.3	30.5	31.3	33.4	33.4	33.5		20
룩셈부르크	33.6	34.0	33.6	33.8	33.3	33.8	33.5	34.5		19
멕시코	21.0	19.0	18.8	18.4	18.1	18.2	18.5	18.4		25
네덜란드	45.1	42.1	41.5	41.4	41.3	41.3	41.5	41.6		9
뉴질랜드	45.2	47.3	49.1	49.4	50.7	51.6	50.9	50.6		1
노르웨이										
폴란드	32.7	33.5	33.1	31.4	34.1	36.6	36.4	36.3		15
포르투갈	34.9	36.6	35.4	35.6	36.3	37.2	38.9	38.8		11
슬로바키아	34.3	34.6	34.6	34.8	33.7	35.5	35.7	35.7		16
슬로베니아		43.1	43.0	42.0	40.9	40.1	45.9	47.2		3
스페인	34.1	34.9	34.9	36.0	34.9	34.9	34.6	34.7		18
스웨덴										
스위스										
터키	26.7	39.7	38.4	37.9	37.6	37.8	37.8	37.8		13
영국	34.1	36.9	37.1	38.2	37.8	38.0	37.9	38.2		12
미국	28.5	24.5	23.7	23.5	25.4	27.0	28.4	28.4		24
OECD평균										
단순평균	35.5	36.6	36.5	36.2	36.5	37.3	37.4	37.8		
최대값	58.5	49.5	49.1	49.4	50.7	51.6	50.9	50.6		
최소값	21.0	19.0	18.8	18.4	18.1	18.2	18.5	18.4		
응답국가	23	24	25	24	24	25	24	25		

자료: OECD.Stat에서 2013.10.24. 추출
주: 순위는 2011년

<부표8> 폴타임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중위값 기준, 단위: %)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순위
호주	58.2	57.5	53.8	54.5	52.2	54.4	54.3	53.6		8
오스트리아										
벨기에	53.1	50.9	49.8	50.3	50.8	51.6	50.7	50.3		10
캐나다	41.2	40.0	40.5	40.4	41.4	42.6	43.6	45.0		16
칠레	64.0		65.0			70.7		67.4		2
체코	31.7	38.7	39.8	38.3	36.0	36.0	35.3	34.5		24
덴마크										
에스토니아	32.6	38.3	35.4	34.2	38.6	41.3	40.9	38.6		21
핀란드										
프랑스	56.1	59.7	60.5	60.4	60.4	60.8	60.1	60.1		3
독일										
그리스	47.1	44.8	45.4	46.2	48.0	48.2	49.1	51.1		9
헝가리	37.2	48.1	49.0	48.3	47.7	47.8	47.4	49.5		11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67.5	54.0	52.4	53.1	52.4	50.4	47.6	47.7		12
이스라엘		54.9	57.4	57.3	57.2	56.8	56.0	56.4		7
이탈리아										
일본	32.2	33.5	33.8	34.1	34.6	36.2	37.3	38.4		22
한국	25.6	33.2	34.6	37.4	38.8	40.7	40.6	41.3		20
룩셈부르크	40.9	41.5	40.9	41.1	40.5	41.2	40.9	42.0		19
멕시코										
네덜란드	50.8	47.9	47.2	47.1	47.0	47.0	47.3	47.4		13
뉴질랜드	50.3	54.4	56.0	57.4	59.1	59.4	58.8	58.8		4
노르웨이										
폴란드	39.6	41.2	41.3	38.7	41.7	44.8	44.5	44.5		17
포르투갈	49.2	52.5	51.1	51.4	52.4	53.7	56.6	56.5		6
슬로바키아	42.0	43.2	44.5	44.3	42.8	45.4	45.7	45.6		15
슬로베니아		51.2	51.3	50.0	48.5	48.6	56.6	58.2		5
스페인	43.0	44.2	44.2	45.6	44.2	44.1	43.8	43.9		18
스웨덴										
스위스										
터키	50.4	74.8	72.5	71.5	70.9	71.3	71.4	71.4		1
영국	40.9	45.0	45.4	46.6	46.1	46.1	46.1	46.7		14
미국	35.8	31.6	30.7	31.4	34.1	37.1	38.8	38.3		23
OECD평균										
단순평균	45.0	47.0	47.6	46.9	47.2	49.0	48.4	49.5		
최대값	67.5	74.8	72.5	71.5	70.9	71.3	71.4	71.4		
최소값	25.6	31.6	30.7	31.4	34.1	36.0	35.3	34.5		
응답국가	22	23	24	23	23	24	23	24		

자료: OECD.Stat에서 2013.10.24. 추출

주: 순위는 2011년

<부표9> 시간당 최저임금(2011년 불변가격 및 미국달러 환율로 환산, 단위: US\$)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순위
호주	8.38	11.47	11.14	12.78	12.59	11.86	13.89	15.74	16.00	1
오스트리아						8.43	7.89	8.02	7.23	11
벨기에	7.73	10.39	10.45	11.56	12.42	12.19	11.44	11.91	10.99	4
캐나다	5.64	6.75	7.36	7.85	8.21	8.12	9.33	9.75	9.85	8
칠레	1.44	1.57	1.70	1.76	1.75	1.74	1.96	2.11	2.15	24
체코	0.81	2.08	2.35	2.63	2.94	2.61	2.57	2.72	2.38	22
덴마크										
에스토니아	0.75	1.63	1.76	2.16	2.53	2.40	2.23	2.22	2.06	25
핀란드										
프랑스	7.03	10.71	11.07	12.21	13.09	12.63	11.96	12.54	11.73	3
독일										
그리스	3.40	4.86	5.05	5.64	6.16	6.10	5.65	5.79	4.28	16
헝가리	0.94	2.23	2.23	2.48	2.63	2.22	2.12	2.24	2.26	23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6.74	10.17	10.17	11.71	12.29	12.20	11.74	12.02	10.93	5
이스라엘	4.93	4.71	4.88	5.53	6.22	5.59	5.73	5.99	5.69	13
이탈리아										
일본	5.89	5.99	5.69	5.66	6.49	7.44	8.10	9.15	9.24	10
한국	2.12	3.45	3.83	4.31	3.76	3.35	3.70	3.90	3.98	17
룩셈부르크	8.30	12.23	12.27	13.65	14.40	14.24	13.49	14.21	13.35	2
멕시코	0.76	0.67	0.67	0.67	0.65	0.53	0.57	0.58	0.55	26
네덜란드	7.30	10.00	10.08	11.08	11.89	11.52	11.01	11.37	10.47	7
뉴질랜드	4.57	7.91	7.56	9.14	9.03	8.24	9.52	10.22	10.73	6
노르웨이										
폴란드	1.23	1.81	1.97	2.25	2.98	2.52	2.62	2.69	2.56	20
포르투갈	2.23	3.03	3.05	3.40	3.74	3.78	3.75	3.88	3.49	18
슬로바키아	0.48	1.22	1.37	1.80	2.18	2.36	2.34	2.53	2.42	21
슬로베니아	3.06	4.19	4.26	4.60	5.03	4.91	5.52	5.96	5.50	14
스페인	3.06	4.26	4.38	4.90	5.30	5.24	4.98	5.13	4.63	15
스웨덴										
스위스										
터키		3.38	3.16	3.44	3.39	2.92	3.04	2.81	2.69	19
영국	7.06	10.66	11.04	12.32	11.29	9.67	9.41	9.57	9.38	9
미국	6.73	5.93	5.75	5.92	6.44	7.19	7.48	7.25	7.10	12
OECD평균										
단순평균	4.19	5.65	5.73	6.38	6.70	6.54	6.62	6.93	6.60	
최대값	8.38	12.23	12.27	13.65	14.40	14.24	13.89	15.74	16.00	
최소값	0.48	0.67	0.67	0.67	0.65	0.53	0.57	0.58	0.55	
응답국가	24	25	25	25	25	26	26	26	26	

자료: OECD.Stat에서 2013.10.24. 추출
주: 순위는 2012년

<부표10> 시간당 최저임금(2011년 불변가격 및 미국달러 구매력지수로 환산, 단위:US\$ ppp)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순위
호주	9.14	9.49	9.35	9.66	9.49	9.62	9.57	9.64	9.77	3
오스트리아						7.00	6.88	6.66	6.50	11
벨기에	9.28	9.24	9.22	9.34	9.38	9.70	9.55	9.48	9.46	4
캐나다	6.46	6.31	6.44	6.50	6.76	7.16	7.42	7.44	7.59	9
칠레	2.07	2.35	2.41	2.46	2.45	2.61	2.68	2.73	2.80	24
체코	2.03	3.25	3.46	3.49	3.28	3.24	3.20	3.14	3.04	23
덴마크										
에스토니아	1.28	2.07	2.21	2.49	2.72	2.72	2.65	2.52	2.53	25
핀란드										
프랑스	8.50	9.59	9.83	9.93	9.95	10.13	10.06	10.05	10.17	2
독일										
그리스	4.68	5.02	5.17	5.29	5.40	5.64	5.48	5.35	4.28	17
헝가리	1.81	3.04	3.21	3.11	3.09	3.07	3.01	3.08	3.47	21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7.72	8.63	8.56	9.03	8.86	9.27	9.36	9.13	8.97	6
이스라엘	4.47	4.69	4.83	5.05	4.96	4.89	4.76	4.76	4.88	14
이탈리아										
일본	5.42	5.63	5.65	5.69	5.72	5.94	6.07	6.23	6.29	12
한국	2.60	3.83	3.97	4.34	4.50	4.64	4.63	4.68	4.86	15
룩셈부르크	9.00	9.82	9.76	9.95	9.82	10.23	10.17	10.20	10.37	1
멕시코	0.79	0.80	0.80	0.80	0.79	0.79	0.79	0.80	0.80	26
네덜란드	8.99	9.12	9.11	9.19	9.21	9.41	9.43	9.28	9.25	5
뉴질랜드	6.21	6.92	7.19	7.67	7.92	8.13	8.14	7.98	8.17	8
노르웨이										
폴란드	2.67	2.94	3.08	3.13	3.61	3.94	3.97	4.00	4.19	18
포르투갈	3.41	3.43	3.43	3.50	3.60	3.84	3.99	3.93	3.83	20
슬로바키아	1.25	2.14	2.30	2.50	2.62	2.88	3.00	3.09	3.19	22
슬로베니아	4.06	4.82	4.86	4.81	4.92	5.06	5.96	6.14	6.12	13
스페인	4.20	4.33	4.41	4.52	4.57	4.77	4.75	4.66	4.55	16
스웨덴										
스위스										
터키	2.78	3.73	3.69	3.67	3.61	3.70	3.74	3.85	3.95	19
영국	6.47	8.13	8.32	8.54	8.52	8.61	8.45	8.28	8.24	7
미국	6.73	5.93	5.75	5.92	6.44	7.19	7.48	7.25	7.10	10
OECD평균										
단순평균	4.88	5.41	5.48	5.62	5.69	5.93	5.97	5.94	5.94	
최대값	9.28	9.82	9.83	9.95	9.95	10.23	10.17	10.20	10.37	
최소값	0.79	0.80	0.80	0.80	0.79	0.79	0.79	0.80	0.80	
응답국가	25	25	25	25	25	26	26	26	26	

자료: OECD.Stat에서 2013.10.24. 추출
주: 순위는 2012년